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」 -

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2. 3. 4.

2. 발의자: 박왕규(대표발의), 배지훈, 홍복조, 원종진, 윤권근

3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~안 제8조)
- 라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)

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입법예고: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

6. 검토의견: 보류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,
- 입법의 필요성, 상위법령 저촉 또는 중복 여부,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력 부담 여부 및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
 - 안 제2조제1호 “역사문화인물”이란 달서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·활동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」와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 등 중복된 부분이 있으며,

- 역사적으로 달서구를 빛낸 인물이거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본조례 입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되므로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.